

##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(GSTC)

# 호텔용 GSTC 기준

버전 3, 2015년 12월 21일  
성과지표 포함

### 전문

‘지속가능관광’ 업계 전반의 공통된 이해를 도모하고자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(GSTC: 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) 기준을 수립했으며, 이는 모든 관광업체가 추구해야 할 최소 기준치입니다. 효과적인 지속가능성 계획 수립, 지역사회의 사회·경제적 편익 극대화, 문화유산 확대,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 등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수립한 본 기준을 관광업 전반에 적용합니다.

세계지속가능성기준연합(ISEAL Alliance)은 전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 개발을 위한 국제표준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구로, ISEAL연합의 기준설정 강령에 따라 본 기준을 개발 및 개정했으며 기준은 3~5년 단위로 개정됩니다. 개정계획을 확인하고 향후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려면 [www.gstcouncil.org](http://www.gstcouncil.org)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기준개발 프로세스 및 이력 정보 역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기준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:

- 지속가능성 증명의 근거
-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가 더욱 더 지속가능한 사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사업체가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지원
- 여행객과 여행사가 공급업체 및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성장중인 지속가능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대
- 고객이 건전한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 및 사업체를 선택하도록 지원
- 정보매체가 지속가능관광 제공업체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공통분모
- 인증 및 기타 자발적 프로그램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
- 지속가능관광 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, 비정부, 민간 프로그램에 출발점을 제시
- 호텔학교와 대학 등 교육 및 연수기관을 위한 기본지침 제공
- 리더십을 발휘하여 행동 촉구

본 기준은 목표 달성 방법 또는 달성 여부가 아닌 목표 자체를 제시합니다. 이는 GSTC 기준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성과지표, 관련 교육자료, 실행도구 접근성을 통해 제시됩니다.

## 기준 적용

정당한 사유로 인해 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, 모든 기준을 가능한 온전히 적용하도록 권고합니다. 관광지역의 규제, 환경, 사회, 경제 또는 문화 여건 상, 관광상품에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사회, 경제, 환경의 규모가 작은 지역 공동체가 소유한 소규모 관광사업은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본 기준에 대한 추가 지침은 GSTC가 발행한 지원지표(supporting indicators), 용어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성과지표

본 성과지표는 호텔의 GSTC 기준 준수 측정을 돕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.

본 지표의 초안은 신규 정보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. 신규 지표 또는 기타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[accreditation@gstccouncil.org](mailto:accreditation@gstccouncil.org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## 통합 지표 및 기준

본 문서는 통합된 기준 및 성과지표를 설명합니다.

GSTC 산업기준	호텔용 지표
<b>섹션A: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효율성 입증</b>	
<b>A1 지속가능성 관리시스템</b>  조직은 그 규모, 활동범위에 적합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리시스템을 구현하여 환경, 사회, 문화, 경제, 품질, 인권, 건강, 안전, 리스크, 위기관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적 개선을 모색한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a. 지속가능성관리(SM: Sustainability Management) 시스템을 명확하게 문서화했다.</li><li>b. SM 시스템을 통해 환경, 사회, 문화, 경제, 품질, 인권, 건강, 안전 문제 등을 처리한다.</li><li>c. SM 시스템은 리스크 및 위기관리를 고려한다.</li><li>d. 증빙문서를 통해 SM 시스템을 구현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.</li><li>e. SM 시스템은 지속가능성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지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.</li></ul>

<p><b>A2 법규 준수</b></p> <p>조직은 무엇보다도 건강, 안전, 노동, 환경적 측면을 포함해 관련된 일체의 지방정부, 중앙정부, 국제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일체의 해당 법적 요건 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한다.</li> <li>b. 증명서 및 기타 증빙문서는 일체의 해당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한다.</li> </ul>
<p><b>A3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</b></p> <p>조직은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직의 지속가능성 정책, 조치, 성과 등을 보고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지속가능성 성과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.</li> <li>b.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치를 내·외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통해 보고한다.</li> <li>c.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커뮤니케이션에 포함한다.</li> </ul>
<p><b>A4 임직원 참여</b></p> <p>임직원은 지속가능성 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현에 참여하고, 시스템 운영에 있어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안내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받는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SM 시스템에 임직원이 참여함을 입증할 수 있다.</li> <li>b. 참석자 수준을 고려한 연수코스 및 실무연수(OJT)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.</li> <li>c. 접근가능한 형식(필요시 소수 언어사용 참여자 배려 포함)으로 임직원 연수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</li> <li>d. 임직원이 관련 훈련/기술 증명서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.</li> </ul>
<p><b>A5 고객 경험</b></p> <p>지속가능성 측면을 포함한 고객만족을 모니터링하고 시정조치를 취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고객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고 피드백 결과를 분석한다.</li> <li>b. 부정적 피드백과 반응을 기록한다.</li> <li>c. 시정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.</li> </ul>
<p><b>A6 명확한 홍보</b></p> <p>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조직 및 조직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자료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한다. 제공할 수 없는 사항을 약속하지 않는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실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체험과 고객이 방문하는 장소의 이미지를 홍보에 사용한다.</li> <li>b.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과거의 성과 기록을 근거로 작성한다.</li> </ul>
<p><b>A7 건물과 기반시설</b></p> <p>건물과 기반시설 기획, 부지선정, 설계, 건설, 개조, 운영, 철거...</p>	<p>A7 기준의 지표는 인증숙박시설과 관련된 건물 및 기반 시설에 적용된다.</p>

<p><b>A7.1 요건과 법규의 준수</b></p> <p>...보호대상 및 취약 지역, 유산지정 고려지역과 관련해 지대설정 요건 및 법규를 준수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해당지역의 토지이용 및 활동 관련 법규를 인지 및 준수함을 입증한다.</li> <li>b. 일체의 면허 및 허가 요건을 최신으로 유지한다.</li> <li>c. 법에 명시되지 않은 구역관리계획과 안내(예: 특별지구, 설계 등)를 인지 및 준수함을 입증한다.</li> </ul>
<p><b>A7.2 영향 및 온전성</b></p> <p>...자연 및 문화적 주변환경의 여력과 온전성을 고려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장소선정, 설계, 접근성에 있어 쾌적한 시야 확보, 경관, 문화 및 자연유산을 고려했다.</li> <li>b. 장소선정, 설계, 접근성에 있어 생물학적 취약지역과 생태계 동화능력을 고려했다.</li> <li>c. 고고학유산, 문화유산, 종교 성지를 온전하게 보전했다.</li> <li>d. 자연지역과 보호지역의 온전성과 연결성을 보전했다.</li> <li>e.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종의 서식지 이탈을 야기하지 않았고, 야생동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경감했다.</li> <li>f. 수로/집수지/습지를 변형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서 지표수 유출량을 감소시켰다. 잔여수를 채집하거나 수로로 보내 여과했다.</li> <li>g. 리스크요인(기후변화, 자연현상, 방문객 안전 등 포함)을 평가해 해결했다.</li> <li>h. 영향평가(누적영향 포함)를 실시해 적절하게 문서화했다.</li> </ul>
<p><b>A7.3 지속가능한 방식과 재료</b></p> <p>...해당 지역에 적합하면서 지속가능한 방법과 재료를 사용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실행가능하고 적합한 경우, 건물과 설계에 해당 지역의 재료, 방식, 기술을 적용했다.</li> <li>b. 외래종 대신 지속가능한 출처에서 확보한 재래종 및 토착종 식물을 조경, 장식 등에 사용했다.</li> <li>c. 해당지역의 일반적인 혹은 예상되는 환경조건에 대한 내성을 고려해 식물(예: 가뭄 내성이 있는 식물)을 선택했다.</li> <li>d. 가능한 경우 적합한 증명이 있는 지속가능한 설계, 재료, 건축방식을 건물에 적용했다.</li> <li>e.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을 분류 및 처리한다.</li> </ul>
<p><b>A7.4 열린 접근성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운영 성격에 따라 신체장애자 및 기타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관광지, 건물, 활동에 접근할 수</li> </ul>

<p>...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접근성과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한다.</p>	<p>있도록 한다. b. 접근성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공한다. c. 관련 전문가/사용단체가 접근성을 인증하고 확인한다.</p>
<p><b>A8 대지권, 용수권 및 재산권</b></p> <p>조직의 대지권, 용수권, 재산권 취득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. 지역주민과 원주민은 정보를 바탕으로 권리 취득에 앞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동의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, 비자발적인 재정착을 요구받지 않는다.</p>	<p>a. 토지소유권 및 점유권을 문서화한다. b. 대지 및 용수를 포함한 핵심자원의 사용자 및 접근권을 문서화한다. c. 지역 및 원주민 공동체와의 커뮤니케이션, 협의, 참여를 증빙문서로 입증한다. d. 지역주민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권리 취득에 앞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제공했다는 증거(비자발적 이주 또는 대지 취득이 없음을 입증)를 문서화한다.</p>
<p><b>A9 정보와 해설</b></p> <p>조직은 자연지역, 생활문화, 문화유산구역 방문 시 적절한 행동을 설명하고, 주변의 자연환경, 지역문화,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와 해설을 제공한다.</p>	<p>a. 해당지역의 자연·문화유산에 대한 정보/해설 자료를 작성해 고객에게 제공한다. b. 임직원에게 해당지역의 자연·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및 연수를 제공한다. c. 해당지역에서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.</p>
<p><b>A10 관광지 참여</b></p> <p>기회가 있을 경우 조직은 관광지의 지속가능관광 기획 및 관리에 참여한다.</p>	<p>a. 지역관광관리기구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기구가 존재하는 경우 조직은 해당기구의 회원이다. b. 조직은 지역공동체, NGO, 기타 지역기구가 존재하는 경우 그 파트너십에 참여한다. c. 조직은 관광지의 지속가능관광 관련 기획 및 관리 회의와 활동에 참여한다.</p>

섹션B: 지역주민의 사회, 경제적 편익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

<p><b>B1 지역사회 지원</b></p> <p>조직은 지역기반시설 및 사회공동체개발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원한다. 이 이니셔티브에는 교육, 연수, 건강, 위생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 해결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조직은 지원에 대한 필요 및 기회를 파악하고 필요와 기회의 잠재적인 편익/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와 협력한다.</li> <li>b. 지역공동체 계획에 대한 기여 정도 및 성격을 기록으로 남긴다.</li> <li>c.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관광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.</li> </ul>
<p><b>B2 지역주민 취업</b></p> <p>취업과 승진(관리직 포함)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지역주민의 총 채용비율을 측정하고 관리한다.</li> <li>b. 지역주민의 관리직 채용비율을 측정하고 관리한다.</li> <li>c. 취업기회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연수를 제공한다.</li> </ul>
<p><b>B3 지역사회 구매</b></p> <p>상품·서비스 구입 및 제공 시, 가능하다면 그리고 품질이 만족스러운 경우 조직은 지역의 공정무역 공급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조직은 상품·서비스 공급원을 정기적으로 감사한다.</li> <li>b. 지역주민이 소유·운영하는 사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/서비스 비율을 측정하고 관리한다.</li> <li>c. 외부인이 소유·운영하는 공정무역 공급업체 비율을 측정하고 관리한다.</li> </ul>
<p><b>B4 지역사회 기업인</b></p> <p>해당지역의 자연, 역사, 문화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상품·서비스의 개발과 판매에 있어 지역사회의 기업인을 지원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상업적 활동을 위해 지역주민이 소유한 사업체에게 부지 및 고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.</li> <li>b. 조직은 조직과 함께 일하는 해당지역의 서비스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그들의 서비스 품질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한다.</li> <li>c. 지역사회 기업인과의 합작사업 및 동업 기회를 적절히 고려하여 추진한다.</li> </ul>
<p><b>B5 착취와 폭력</b></p> <p>조직은 특히 어린이, 청소년, 여성, 소수자, 기타 취약집단에 대한 상업적, 성적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착취나 폭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이행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조직은 취약집단의 착취와 폭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문서화했다.</li> <li>b. 정책을 전달하고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.</li> <li>c. 조직은 지역공동체와 함께 착취와 폭력에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.</li> <li>d. 직원연령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(국제노동기구의 정의에 따른)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한다.</li> </ul>

	<p>e. 조직은 아동 성관광 금지 조치를 지원한다.</p>
<p><b>B6 기회의 균등</b></p> <p>조직은 성별, 인종, 종교, 장애 혹은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차별이 없는 고용기회(관리직 포함)를 제공한다.</p>	<p>a. 조직이 여성과 지역공동체의 소수집단 등 차별위험에 처한 집단을 파악했다.</p> <p>b. 각 집단에 속하는 직원비율을 모니터링하고 지역 인구 분포에 비례하도록 한다.</p> <p>c. 내부승진에 해당 집단 구성원을 포함한다.</p>
<p><b>B7 양질의 일자리</b></p> <p>노동권을 존중하고,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최소 생계비 이상을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다. 직원에게 연수, 체험, 승진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.</p>	<p>a. 조직이 국제노동기준과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함을 입증한다.</p> <p>b. 임금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표준생활임금과 대비해 정기적으로 검토한다.</p> <p>c. 전체 임직원 연수기록을 보존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한 연수 수준 및 빈도를 제시한다.</p> <p>d. 고용계약서에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을 지원함을 명시한다.</p> <p>e. 모든 현장근로자에게 용수 및 위생시설을 제공한다.</p> <p>f. 직원만족도를 모니터링한다.</p> <p>g.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.</p>
<p><b>B8 지역사회의 서비스</b></p> <p>조직의 활동이 인근 공동체의 식량, 용수, 에너지, 의료, 위생 제공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.</p>	<p>a. 조직은 지역사회의 서비스 가용성에 조직이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한다.</p> <p>b.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/피드백/고충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.</p> <p>c. 조직의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기본서비스 가용성이 축소되었음이 확인된 경우, 이를 해결한다.</p>
<p><b>B9 지역주민의 생활</b></p> <p>조직의 활동이 대지와 수자원 이용, 통행권, 이동, 거주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생활접근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</p>	<p>a. 개발과 운영에 대한 결정 시 지역주민의 생활 접근성을 고려한다.</p> <p>b. 지역주민의 생활접근성이 축소된 경우, 지역주민이 이를 보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.</p>

## 섹션C: 문화유산에 대한 편익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

<p><b>C1 문화적 상호작용</b></p> <p>조직은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편익 및 방문객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주민공동체 및 문화·역사민감지역 방문을 관리하고 홍보함에 있어 국제, 국내 모범관행 그리고 해당지역과 합의한 안내 및 지도를 준수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a. 관광객의 문화지역 및 원주민 공동체 방문을 위해 조직은 국제, 국내, 해당지역의 현행 모범관행 및 지도내용을 인지하고 준수한다.</li><li>b. 필요한 경우 조직은 지역공동체/관광지와 함께 지도내용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합의하는데 참여한다.</li><li>c. 지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전달한다.</li><li>d. 아동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조치를 실행하고 있다.</li></ul>
<p><b>C2 문화유산의 보호</b></p> <p>조직은 역사적, 고고학적, 문화적, 종교적 의미가 있는 지역공동체의 재산, 관광지, 전통을 보호, 보존,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a. 조직은 문화유산보호를 위해 재정분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기록한다.</li><li>b. 조직은 문화유산을 위해 현물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.</li><li>c. 지역주민이 문화유산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</li></ul>
<p><b>C3 문화와 유산의 반영</b></p> <p>조직은 지역공동체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한편, 지역의 전통 및 현대문화의 정통적인 요소를 소중하게 여기고 조직운영, 설계, 장식, 음식, 매장 등에 이를 반영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a. 설계와 가구에 지역의 예술 및 공예를 반영한다.</li><li>b. 제공하는 음식, 소매점, 행사, 기타 서비스 등에 생활문화유산, 전통을 반영한다.</li><li>c.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을 준수하고 필요한 허가를 인가받았다.</li><li>d. 지역문화유산 공개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구했다.</li></ul>
<p><b>C4 유물</b></p> <p>국내 및 국제법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역사 및 고고학 유물을 판매, 거래, 전시하지 않는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a. 모든 유물의 이용은 투명해야 하고/또는 이를 문서화하여 보고한다.</li><li>b. 유물 이용 시, 이를 허용하는 법규와 내규가 있음을 확인했다.</li><li>c. 방문객이 유물을 제거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.</li></ul>

**섹션D: 환경에 대한 편익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**

**D1 자원 보전**

<p><b>D1.1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구매</b></p> <p>구매 정책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급업체와 상품(자본재, 식음료, 건축자재, 소비재 등 포함)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환경적 구매정책을 문서화했다.</li> <li>b. 환경인증 받은(특히 목재, 용지, 생선, 기타 음식, 자연에서 얻은 제품 등에 있어) 제품과 공급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.</li> <li>c. 인증제품 및 공급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, 원산지와 재배·생산방식을 고려한다.</li> <li>d. 멸종위기종을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.</li> </ul>
<p><b>D1.2 효율적 구매</b></p> <p>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조직은 음식물을 비롯한 소모품과 일회용품 구매를 신중하게 관리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재사용, 공용기 환불,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구매한다.</li> <li>b. 소모품과 일회용품 구매 및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.</li> <li>c. 불필요한 포장(특히 플라스틱 성분)을 피하고 적절한 대용량 포장을 구입한다.</li> </ul>
<p><b>D1.3 에너지 절약</b></p> <p>유형별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다. 조직은 조직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고자 노력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총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.</li> <li>b. 에너지 유형별로 관광객 1인/1박 기준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.</li> <li>c.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전체 에너지 공급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.</li> <li>d.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장비와 방식을 이용한다.</li> <li>e.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했다.</li> <li>f. 임직원과 관광객에게 에너지 사용 최소화에 대해 안내한다.</li> </ul>
<p><b>D1.4 용수 보전</b></p> <p>물 리스크를 평가하고, 유형별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전체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다. 용수 확보는 지속 가능해야 하며 환경흐름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. 물 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경우 지역상황을 반영한 용수관리 목표를 파악하여 시행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물 리스크를 평가하고 문서화한다.</li> <li>b. 물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된 곳에 대한 용수관리 목표를 설정했다.</li> <li>c. 수원(水源)별로 관광객 1인/1박 기준 물 소비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.</li> <li>d. 용수사용을 최소화하는 장비와 방식을 활용한다.</li> <li>e. 과거에 피해를 입지 않았던 수원(水源)에서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물을 확보하며, 해당 용수는 향후 환경흐름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.</li> <li>f. 인근지역관광이 수원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고려한다.</li> <li>g. 용수절약 목표를 설정했다.</li> <li>h. 임직원과 투숙객에게 용수 사용 최소화에 대해 안내한다.</li> </ul>

D2 오염 저감	
<p><b>D2.1 온실가스배출</b></p> <p>조직이 통제하는 모든 출처에서 발생하는 주요 온실가스배출을 파악하며, 가능한 경우 이를 산출하고 온실가스배출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실행한다. 조직의 잔여배출권 거래를 통한 상쇄를 독려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온실가스 직·간접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.</li> <li>b. 관광객 1인/1박 기준 탄소발자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.</li> <li>c. 조직이 통제하는 모든 출처에서 매년 발생하는 주요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방지 및 감축 조치를 취한다.</li> <li>d.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한다.</li> </ul>
<p><b>D2.2 운송 및 이동</b></p> <p>조직은 운송수요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고객, 직원, 공급업체가 그리고 조직운영 시 더 깨끗하고 자원 효율적인 대안을 이용하도록 적극 독려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도착, 출발 및 방문 중에 대체(기후친화적)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홍보한다.</li> <li>b. 투숙객과 임직원에게 대체 교통수단(예: 자전거 대여, 카셰어링, 픽업)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.</li> <li>c. 더욱 지속가능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접근가능한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.</li> <li>d. 지역공급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일상운영을 위한 교통수단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.</li> </ul>
<p><b>D2.3 폐수</b></p> <p>중수(grey water)를 포함한 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재사용하거나 안전하게 방류하여 지역주민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지역처리시설 또는 정부승인시설이 있는 경우 폐수를 그 시설에서 처리한다.</li> <li>b. 적절한 지역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(국제 폐수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), 폐수처리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해 지역주민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.</li> </ul>
<p><b>D2.4 고형폐기물</b></p> <p>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폐기물을 측정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이용한다. 폐기물 감소가 불가능한 경우,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한다. 잔여폐기물 처리는 지역주민 혹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관광객 1인/1박 기준 고형폐기물 처리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.</li> <li>b. 고형폐기물 관리계획이 있다.</li> <li>c. 고형폐기물 관리계획은 음식물쓰레기 감소, 분리, 재사용 혹은 재활용 조치를 포함한다.</li> <li>d. 폐기물을 정부가 운영/승인한 시설에서 처리하고 시설이 지역주민 혹은 환경에 악영향이 없음을 입증한다.</li> <li>e. 처리한 고형폐기물을 유형별로 측정하고 미전환 고형폐기물의 최소화 목표를 설정했다.</li> <li>f. 고객, 임직원에게 폐기물 최소화를 안내한다.</li> </ul>
<p><b>D2.5 유해물질</b></p> <p>살충제, 페인트, 수영장 소독약품, 세제 등의 사용을 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유해물질 재고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보유하고 있다.</li> <li>b. 더욱 친환경적인 대체품을 얻고자 조치를 취했다.</li> </ul>

<p>소화하고 가능하면 무해한 상품이나 프로세스로 대체한다. 모든 화학약품 저장, 사용, 취급, 처리를 적절하게 관리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c. 화학약품, 특히 대용량 화학약품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저장하고 취급한다.</li> <li>d. 방문객이 방문지역의 환경에 유해한 물질(예: 독성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나 벌레 퇴치제)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한다.</li> </ul>
<p><b>D2.6 오염의 최소화</b></p> <p>조직은 소음, 불빛, 유출물, 침식, 오존 파괴물질이 야기하는 오염, 그리고 대기, 수질, 토양오염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실행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기준에 명시된 잠재적 오염원을 검토하고 파악했다.</li> <li>b. 기준에 명시된 잠재적 오염원을 모니터링한다.</li> <li>c. 기준에 명시된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한 오염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경우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다.</li> </ul>
<p><b>D3 생물다양성,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</b></p>	
<p><b>D3.1 생물다양성 보전</b></p> <p>조직은 조직의 부지를 적절히 관리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지원하고 이에 기여한다. 자연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. 자연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고 이를 복원하며 보전관리를 위해 배상적 분담금을 부담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조직이 자연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입증한다.</li> <li>b. 조직은 해당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며 이를 기록한다.</li> <li>c. 조직은 해당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현물이나 기타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.</li> <li>d. 호텔 부지의 적극적인 관리활동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지원한다.</li> <li>e. 조직은 야생동식물과 서식지를 교란할 수 있는 활동을 인지하고 이를 경감한다.</li> <li>f. 교란 발생 시, 이를 배상한다.</li> <li>g. 방문객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한다.</li> <li>h. 조직은 지역 NGO와 협력한다.</li> </ul>
<p><b>D3.2 외래종</b></p> <p>조직은 외래종 도입 예방 조치를 취한다. 조경 및 복원 작업 시 재래종을 사용하고 특히 자연경관 조성 시 가능한 한 재래종을 사용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호텔 부지의 외래종 현황을 모니터링한다.</li> <li>b. 외래종 도입 혹은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.</li> <li>c. 외래종 박멸 및 통제 프로그램이 있다.</li> <li>d. 재래종 활용을 고려하기 위해 호텔 부지의 조경을 검토한다.</li> </ul>
<p><b>D3.3 자연지역 방문</b></p> <p>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연지역 방문을 관리하고 홍보함에 있어 적절한 지침을 준수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조직은 관광객의 자연지역 방문에 대비, 현행 지침을 인지하고 준수한다.</li> <li>b. 관광지역 방문 시 그리고 관광객에게 정보 제공 시 지침을 활용한다.</li> <li>c. 조직은 특정한 관광지 방문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고 파악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보전기구와 협력한다.</li> </ul>

<p><b>D3.4 야생동물과 상호작용</b></p> <p>동물과 야생생태계의 생존능력 및 행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이(누적영향을 고려하여) 그들의 생활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책임있게 관리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조직은 야생동물 관찰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에 대한 현행 지역, 국내, 국제 규제와 지침을 인지하고 준수한다.</li> <li>b. 야생동물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조직은 야생동물 관리를 포함한 야생동물과의 접촉에 대한 해당지역의 조례·지침 개발과 이행에 참여한다.</li> <li>c. 국제적으로 용인된 기준에 따라 또는 기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독립적인 야생동물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, 직접적 접촉(특히 먹이주기)을 금지한다.</li> <li>d. 야생동물 교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다.</li> <li>e. 야생동물 복지에 대한 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한다.</li> </ul>
<p><b>D3.5 동물복지</b></p> <p>어떠한 야생동물종도 습득, 번식, 노획하지 않는다. 단, 국내 및 국제 법규에 따라 올바른 장비를 갖춘 공인된 전문가가 적절한 관리 활동을 위해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모든 야생동물과 가축류의 수용, 돌봄, 취급 시 가장 강력한 동물복지기준을 따른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조직은 포획야생동물에 대한 법규 및 규제를 인지하고 준수한다.</li> <li>b. 포획야생동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광활동에 대한 현행 지침을 이행한다.</li> <li>c. 포획야생동물 담당자는 적법한 자격 및 경험을 보유한, 정식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.</li> <li>d. 조직은 동물복지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인지하고 준수한다.</li> <li>e. 포획야생동물의 상태 및 수용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.</li> <li>f. 가축의 상태 및 수용·취급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.</li> </ul>
<p><b>D3.6 야생동식물 채집 및 거래</b></p> <p>야생동식물종을 채집, 소비, 전시, 판매, 거래하지 않는다. 단, 국내 및 국제 법규를 준수한 야생동식물종의 활용이 야생동식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 활동의 일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. 조직은 야생동식물 채집 및 거래 관련 법규와 규제를 인지하고 준수한다.</li> <li>b. 방문객을 대상으로 야생동식물의 채집, 소비, 거래 관련 규제 그리고 국제자연보전연맹(IUCN)이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(CITES)이 명시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으로 제작한 불법상품/기념품 구입이 금지됨을 안내한다.</li> <li>c. 사냥활동이 합법인 경우, 이를 과학적 근거에 의한 야생동식물 보전 방법의 일환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엄격하게 시행한다.</li> </ul>